

포천뽕 생활안전협의회 신설

소흘, 포천, 일동, 영북 등 열린행정의 초석 삼아



포천경찰서(서장 최원일)는 지난 17일 11시 포천시 소흘읍 소흘읍사무소(솔모문화관)에서 포천시의원, 지역기관장, 생활안전협의회장 및 위원, 지역 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흘지역 생활안전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최원일 포천경찰서장은 격려사를 통해 "생활안전협의회는 생활안전협의회를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간단한 설명과 함께 현 주요시책인 합동목검소 운영에 대한 홍보"라고 새로 구성된 생활안전협의회 협의회의 소개와 협의회의 목표 등을 설명 등 각 생활안전협의회 위원들의 의문점 및 건의사항 등을 질의 응답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소흘지역 생활안전협의회 발대식에 참석한 주민들은 "기존의 자율방범자문위위원회와 차별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모두 만족해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경찰행정에 반영하는 친절하고 적극적인 포천경찰에 신뢰가 간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경찰서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경찰제도"에 따라 기존의 12개 파출소와 1개 분소를 소흘지구대를 포함 4개의 지구대와 내촌특수파출소를

포천 2개의 특수파출소, 각 지구대 소속하에 7개의 파출소를 민원담당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민원담당관에게 집중시키고 치안센터로 개편했다.

이 제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원해진 치안센터구역에 대한 주민참여 유도와 치안시책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부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와 주요시책을 홍보·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생활안전협의회를 조직했다.

포천경찰서는 이번 생활안전협의회 발대식을 소흘지역으로 시작 3개 지구대의 포천, 일동, 영북의 3개지역 생활안전협의회 발대식을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을 위한 초석으로 만들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net

한탄강댐 갈등조정 협의체 구성

정부·주민·환경단체 등 17명 참여

찬·반 논란으로 2년째 차질을 빚고 있는 한탄강댐 건설 사업과 관련, 정부와 환경단체, 주민 등이 해당사업자들이 참여하는 갈등조정 협의체가 구성돼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위원장 정진승 KDI 국제정책대학원장)는 '한탄강댐 문제조정을 위한 관련 당사자 회의(이하 한탄강댐 조정회의)'를 구성하고 절차와 대강의 일정에 합의했다.

이 협의체에는 찬·반 주민 8명과 정부 관계자 3명, 환경단체 3명 등 14명이 참가하며 갈등조정소위 위원 3명이 조정자로 함께 활동한다.

갈등을 겪고 있는 국책사업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협의체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갈등 해결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탄강댐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전 약속'이라는 제목의 합의서에 따르면 일체의 사업 진행을 중단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전체 회의를 열어 가능하면 8월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내기로 했다.

이 합의에 따라 한탄강댐 건설 사업이 즉각 중단됐으며 한탄강댐 현장 사무실 직원들도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철수했다.

조정회의는 오는 16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지속가능발전위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찬반 주민 의견을 듣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진행되며 조정회의 대표자 전원 합의로 협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주민간 찬반 대립이 3년째 계속되고 있고 해당 지역 자치단체간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갈등 합의 조건이 만장일치여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정부는 입진강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1999년부터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와 포천시 연인면 중리 일대에 담수용 3억1천500만 규모(높이 85m, 길이 705m)의 한탄강댐을 건설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나 지난해 9월 사업계획 고시를 앞두고 경기 연천, 포천, 강원 철원 주민들 간에 찬반 논란이 계속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net

관인면 홈페이지 오픈

“관인면의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포천시 관인면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지역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인터넷 주소는 www.kwanin.or.kr이며, 주소창에 한글로 "관인넷"을 쳐도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홈페이지는 크게 ▶ 관인면 안

내 ▶ 민원안내 ▶ 민원도우미 ▶ 지역네트워크 ▶ 열린광장 ▶ 우리동네 링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통마을 농촌관광과 ▶지역 군부대 교통편 ▶주요 관광지 안내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홈페이지의 민원자료실과 민원 질의응답, 주민토론회, 주민제안, 자유게시판, 청소년야당 등은 면사무소와 주민, 그리고 주민과 주민 사이의 보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관내 각종 기관과 단체, 모임 등과 관련된 모든 사이트를 한 곳에 모아놓아 관인면 포털사이트로

서의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생활에 유용한 사이트 모음"란과 "구인/구직/아르바이트 등의 채용정보"도 눈길을 끈다.

관인면 관계자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하며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홈페이지를 구축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이를 잘 관리하고 주민의 참여도를 계속 높여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net

포천경찰서 청성초 병설유치원생 견학

경찰 장구류 견학 및 전·의경 시범



포천경찰서(서장 최원일)는 지난 17일 포천시 군내면 소재 '청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생 20여명이 지도교사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 경찰업무 및 활동사항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경찰서를 방문한 유치원생들은 경무계 김순식 경장의 인

솔하에 4층 강당에서 경찰업무 및 활동사항에 대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들은 후, 경찰장구류 견학 및 전·의경의 시범으로 진압 장면을 구경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원생들에 권총 및 수갑등 경찰장구류를 먼저보여 하는 시간에는 하나같이 신기한 속에 견학을 실시했으며, 이 때 인솔자가 원생들에 "커서 뭐가 될까요?"라고 질문하자 모든 원생들은 일제히 "경찰관이 될래요"라고 말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112신고센터 및 상황실을 견학한 후 경찰서 전경에서 기념 촬영을 끝으로 견학을 마쳤다.

문지연기자 soma7000@naver.com

포천시, 자동차세 부과

이달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5%부과

경기도 포천시가 2004년도 상반기 정기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대상은 6월 1일 현재 승용, 승합, 화물,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량 등을 포천시에 등록해 놓고 있는 차로,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포천시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세액의 5% (단,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가산)에 해당하는 가산금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촉장

박윤국 포천시장은 15일 시장실 박윤국 포천시장은 15일 시장실에서 신상철 법무사 등 4명에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병만 기자 jpk61@hanmir.com



국립수목원 꽃누리미전 열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오는 7월 9일까지 수목원을 찾는 어린이들을 위해 꽃누리미(압화)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수목원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꽃누리미협회 회원들이 꽃을 소재로 만든 생활용품, 액세서리, 풍경화 등 꽃누리미 작품 150점이 전시된다.

문의: 031-540-1030

대진대 평생교육원 2004년 여름학기 수강생 모집

대진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2004년 여름학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7월5일 개강일까지 선착순으로 각 과정별로 모집을 한다. 수강신청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수강신청을 하거나 평생교육원 교학과에 접수 하면 된다.

강의기간은 7월5일부터 8월 27일까지로 8주간이며 수강 과목은 ▶외국어 강좌▶컴퓨터 강좌▶일반교양 강좌▶전문가 자격증 강좌 등으로 나뉜다.

외국어 강좌로 TOEIC 문법반, 영어회화초급반, 영어회화 중급반, 중국어회화 시작반, 중국어회화 계속반, 어휘로 배우는 중국어반이 개설된다.

컴퓨터 강좌는 PCT자격증 과정, 홈페이지 제작과정, 직장인 컴퓨터과정 등이 있다.

일반 교양강좌로는 재즈댄스, (이정숙의)다이어트댄스, 스피치와리더십, 스포츠댄스, 수지침, 요가, 운동재활 맛사지, 뇌호흡지도

자 양성과정등이 있다.

전문가 자격증과정은 금번 여름학기에는 개설이 없다.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은 포천시민들과 주변지역 시민들에게 알찬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031)539-1245, 1242, 1241로 문의하면 된다.

이의수기자 les5682@hanmail.net

다중이용업의 범주 및 영업주 준수사항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다중이용업의 범위) 및 동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종 다중이용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100㎡ 이상, 지하층의 경우 66㎡이상(영업장이 지상 1층 제외)
- 단란주점업 및 유흥주점업
-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지상 1층 제외),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희·제공업(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중 2 이상을 영위하는 영업)
- 학원(수용인원 100인 이상)
- 목욕장업 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
- 찜질방업(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 종류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제공업(pc방)(지상 1층 제외)
- 수면방업 -클라벵업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함(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 불연화란: 내부시설의 마감재료 또는 실내장식물이 불에 타지 않도록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설치하는 것을 말함.
- 불연재료란: 벽돌, 철강, 유리, 시멘트 등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서 화재 이후 재사용이 가능한 것.
- 준불연재료란: 석고보드 등 불에 타지는 않지만 화재 이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의해 시험한 결과 난연2급으로 판정 받은 물품
- *공인검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방재시험연구소 등에서 시험하여

하여 불연·준불연의 성능인정을 받은 것 *별첨규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과태료)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벌칙) 제1항에 의거 시정명령 조치 불이행시 적법절차에 따라 입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

◎피난·방화시설 위반사항(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 (폐쇄행위)
 - 건축법령에 의거한 피난·방화시설을 유사시 사용 못 하도록 폐쇄
 -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창) 등을 설치해 시간장치로 잠금
 - 비상구 등에 열기 어려운 시간장치(고정식 잠금장치 등) 설치
 - 용접, 조적, 쇠파스, 석고보드, 합판 등으로 막아 개방 불가능 상태
- (훼손행위)
 - 방화문 철거(제거),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 등 설치, 자동폐쇄장치 등 제거
 - 거로 기능 저해
 - 배연설비 작동 장애 및 구조적인 시설을 물리력을 가하여 훼손할 때
- (변경행위)
 - 방화구획·내부마감재료의 임의 변경
 - 임의구획으로 무장중화, 방화구획에 개구부 설치 등
 -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
 - 객관적인 판단하여 누구라도 변경으로 인한 건축법령 위반이라 볼 수 있는 행위
- (적치행위)
 - 계단·복도(통로)·출입구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의 설치
 - 고정식 잠금장치는 아니나 계단·복도에 방범철책(문) 등 설치
 - 방화샤타 주위에 물건·장애물의 설치로 기능이 지장 초래
- (장애행위)
 - 내부·방화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유발하거나
 - 화재시 소방호스 전개상 걸림·표입 현상 등 소방활동에 지장 초래
- *별첨규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과태료)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벌칙)에 의거 시정명령 조치 불이행시 적법절차에 따라 입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 제1항에 의거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야 한다.

*별첨규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과태료)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벌칙) 제1항에 의거 시정명령 조치 불이행시 적법절차에 따라 입건(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제2항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첨규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과태료)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허가시 용도의 영업장의 내부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등을 새로 갖추어야 하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2004.5.30) 당시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은 다중이용업 영업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2006.5.30) 다중이용업의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소방시설 등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법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 및 관리되어 온 소방시설 등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 등으로 본다.

포천소방서

◆주소: 포천시 군내면 구들리 669
◆연락처: 031) 535-7119